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2017년 11월 29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1.29(수) 오전 10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 일시	2017. 11. 28(화) 15시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국 방 부 물자관리과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관 세 청 통관기획과
담당 과장	석유산업과장 박재영(044-203-5220) 물자관리과장 김종덕(02-748-5720) 농기자재정책팀장 최호종(044-201-1891) 물류정책과장 이상일(044-201-3993) 수산정책과장 이경규(044-200-5420) 통관기획과장 김윤식(042-481-7810)	담 당 자	송홍석 사무관(044-203-5228) 엄혜선 사무관(02-748-7484) 최승묵 사무관(044-201-1840) 김창연 사무관(044-201-3997) 심상철 사무관(044-200-5431) 장은수 주무관(042-481-7828)

정부, 석유제품 불법거래 뿌리 뽑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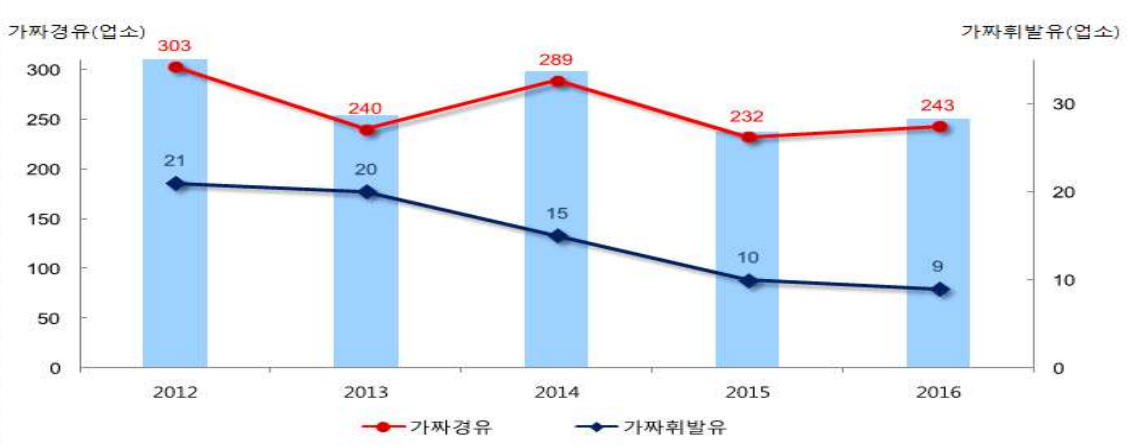
- 11.29, 관계부처 합동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 발표
- 면세유, 유가보조금, 항공유 등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
- 품질부적합, 정량미달 등 불법행위 단속과 함께 품질관리 강화
- 산업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관련 부처간 정보공유 확대

□ 정부는 11월 29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석유제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석유제품의 불법유통**을 **근절(根絶)**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으로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 최근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나 석유중간제품을 경유와 혼합하여 **가짜경유를 제조해 판매**하거나 **정제유*** 등을 **가짜경유 원료로 위장수입**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능적 수법을 이용해 진화**해 가고 있고,

* 식별제 : 경유와 등유가 혼합될 경우 식별하기 위해 등유에 첨가하는 화학물질
* 정제유 : 가열, 약품혼합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폐유를 정제하여 생산한 연료유

《 **가짜석유 적발 현황** 》



○ 농·어민에게 **면세유를 가짜석유로 공급**하거나, 신용카드 불법할인(카드깡) 등을 통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단속기관의 **관리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사례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또한, **군납유, 항공유, 윤활유,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가짜석유, 품질부적합, 정량을 속여 파는 행위 등의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 이와 같은 석유시장의 변칙적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석유제품의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고, 세수탈루를 차단하여 재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6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 이번에 범정부적으로 마련된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상세내용 붙임 참조).

1. 가짜석유 유통 대응체계 마련

① 가짜경유 유통 근절을 위해 제거가 어려운 **신규 식별제를 도입**하고, 가짜석유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위장수입**(경유를 정제유로 수입) **제품과 석유중간제품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한다.

○ 경유와 등유의 혼합 방지를 위해 현행 식별제보다 **제거하기가 더 어려운 신규 식별제를 도입**해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 현재 **정제업자, 수출입업자 등 석유사업자들이** 제품별 구분 없이 수급상황을 보고하고 있는 석유중간제품을 제품별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도록 **수급보고 대상을 세분화**하고, 석유중간제품 **수급보고 대상 기관**을 석유공사에서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변경**하여 수급보고체계를 정비하는 등 석유중간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또한, 가짜석유 원료의 위장수입 차단과 유통 방지를 위해 **관세청**의 정제유 등에 대한 **수입통관 정보를 매월 석유관리원과 공유**하는 등 **관세청과 석유관리원간 협력을 강화**한다.

2. 면세유·유가보조금 불법행위 근절

② 고질적으로 지속되어온 농·어업용 **면세유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들이 **대폭 보완**한다.

○ **(면세유)**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수협의 **면세유에 대한 품질검사**를 **도입**한다.

* (농업용) 농산물품질관리원-석유관리원 / (어업용) 어업관리단-석유관리원

- 또, 농식품부에서 농업용 면세유 취급주유소를 **신규로 지정할 경우 신규 주유소에 대해서는 주간 단위의 전산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면세유 취급주유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16년 면세유 규모 : (농업용) 1,337천㎘, (어업용) 1,096천㎘

○ **(유가보조금)** 2018년 6월까지 국토교통부, 지자체, 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 합동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를 가동하여 정기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부정수급 환수금과 지급예정 **유가보조금 상계 처리**, **유가보조금시스템과 관련 정부시스템**(운전면허 관리·운수종사자자격관리·의무보험가입관리 시스템 등)**간 연계 확대** 등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을 강화**해 간다.

* '16년 유가보조금 지원내용 : 경유 346원/ℓ, LPG 198원/ℓ (연간 2조 393억원)

3. 품질검사 사각지대 관리 강화

③ 그동안 품질관리 영역 밖에 있었던 **항공유, 윤활유, 군납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가 강화**된다.

○ **(항공유)** 아직까지 국내법에 품질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외국의 품질기준에 의존해 왔던 **항공유에 대해 적정한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기준을 신설**하고 **품질검사도 신규 도입**한다.

○ **(윤활유)** 지금까지는 정제광유*를 70% 이상 함유한 윤활유에 대해서만 품질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정제광유 함유량과 상관없이 **모든 윤활유로 품질검사를 확대**한다.

* 정제광유(mineral oil) :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윤활유 제조원료

○ **(군납유)** 군에 납품되는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생산단계 제품뿐만 아니라 군에 납품된 석유제품에 대해서까지 **군과 석유관리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품질검사를 정례화**(육·해·공군 연간 각 2회)한다.

* 국방규격에 미달하는 수입 윤활유를 군에 납품한 사례(15억원 상당) 적발('17.5월)

4. 석유유통시장 검사·확인제도 개선

④ 불법석유제품으로 의심되는 연료의 역추적을 위한 **품질확인서비스가 확대**하고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정량검사**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 면세유를 공급받는 농·어업인과 유가보조금을 지원받는 운송사업자에 대해 가짜석유 적발 등을 위한 **연료품질 확인 서비스를 도입**한다.

- 농·어업인이나 운송사업자가 공급받은 석유제품이 불법연료로 의심될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어업관리단을 통해 **품질검사를 의뢰하면 석유관리원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 품질검사 후 **가짜석유일 경우 연료 판매자를 역추적해 적발**하고 관련 정보 제공자에게는 가짜석유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 현재는 휘발유·경유 등에 대해서만 정량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액화석유가스**(LP가스)에 대한 **정량검사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 **정량검사** :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한 석유의 양이 실제 공급량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지자체나 석유관리원이 확인하기 위한 검사

□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이 관계부처간 석유거래정보* 공유 미흡, 품질관리 취약* 등 **그동안 제기되었던 제도적 미비점**(loophole)**을 촘촘하게 보완한 대책이라고 평가**하고,

* 석유수급·거래정보(산업부), 면세유 거래정보(농식품부·해수부), 유가보조급 수급정보(국토부), 군납유 정보(국방부), 정제유 수입통관 정보(관세청) 등

* 품질기준 없음(항공유), 일부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미실시(윤활유), 품질검사 제한(어업용 면세유, 군납유), 정량검사 미실시(LP가스) 등

○ 이번 대책을 통해 가짜경유, 품질 부적합 등 불법석유 제품의 유통을 근절시켜 **소비자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고, 관련기관간 정보공유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면세유 탈세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방지해 **연간 약 1,580억 원 이상의 재정 효율화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거래와 관련된 정보공유와 합동점검을 위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법령 정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석유제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 (요약, 표)
2.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 (종합)
3. 가짜석유·면세유 유통구조 및 대책 (그림)
4. 유가보조금(경유·LPG) 수급구조 및 대책 (그림)

※ 추가제공 가능 자료

1. 가짜경유·항공유·윤활유 표본(한국석유관리원 협조)
2. 석유제품 품질 전문가 인터뷰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송홍석 사무관(☎ 044-203-5228), 국방부 물자관리과 엄혜선 사무관(☎ 02-748-74846),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최승묵 사무관(☎ 044-201-1840),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김창연 사무관(☎ 044-201-3997),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심상철 사무관(☎ 044-200-5431), 관세청 통관기획과 장은수 주무관(☎ 042-481-782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